##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43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이헌승·박덕흠·윤상현

김선교 • 서지영 • 김예지

박준태 • 백종헌 • 서일준

유용원 · 김도읍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 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 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법률 제 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을 "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생 략)	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②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	
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	
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u>국</u>	<u>제2</u>
<u>가나 지방자치단체인</u> 경우에는	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u>해당하는</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